

하여 계속 소유할 것인가 또는 처분할 것인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둘째, 준행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출자재산과 준공용재산이 있다.

준공용재산이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에 입각하여 무상대부 등에 의해 대부하고 있는 잡종재산이다. 이 재산은 대부를 해주는 국가·지방자치단체측에서 보면 잡종재산이지만 대부를 받는 국가·지방자치단체측에서 보면 타유공물이 되므로 공물로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때 대부를 하여 주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당해 잡종재산에 대한 관리행위는 당해 잡종재산이 대부의 목적에 따라 적당하게 사용되고 유지·보전이 적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감독하는데 그친다.

셋째, 현재 공부상으로는 잡종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특정한 행정목적에 제공되고 있거나 장래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으로서 보유하고 두는 잡종재산이다. 아직 예정공물의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한 재산으로 이른바 준예정공물 정도로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종류의 잡종재산은 그 성질상 자유로이 처분하거나 장기 대부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장래의 이용을 해치지 않는 한도내에서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다.

사 례1 : 지방재정법 제83조(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 규정상의 잡종재산은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 사권을 설

정할 수 있는 것은 사법관계에서 개인의 재산, 신분등에 관한 권리 즉 인격권, 채권, 물건, 무체재산권 따위로서 여기에 물권은 잡종재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2000. 8. 17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 잡종재산을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에 특정자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따라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권설정도 불가함

사 례2 : 의료원의 법인설립등기시 출자내역에 포함된 재산이 도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현시점에서 출자 방법 및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 여부(2000. 5. 13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 '83. 8. 13 이후 지방공사 의료원이 당해재산을 재무제표에 소유건물로 관리하면서 감가상각을 회계처리를 하고 있어 외관상으로는 마치 지방공사 의료원에 출자된 것처럼 보이나

○ 현재 당해재산의 소유권이 ○○○도로 등기되어 있고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되어 관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자로 인한 권리를 동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는 점과 ○○○도 '99. 3. 20 용도폐지를 하여 잡종재산으로 계속 관리해온 점에 비추어 당해재산은 출자되지 아니한

○ ○○○도 소유의 공유재산이 분명하며 감사원에서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출자토록 하고 있는바

○ 당해 재산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